

부패방지 행동강령

서문.....	3
1. 행동강령의 핵심 내용.....	4
2. 책임.....	4
3. 일반 원칙.....	5
4. 선물 및 접대.....	6
5. 이해 상충.....	7
6. 공무원과의 관계.....	7
7. 공공 참여.....	7
8. 기업 후원.....	8
9.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며, 투명한 재무 정보.....	8
10. 부정부패로 인식될 수 있는 사항.....	9
11. 취할 수 있는 예방조치.....	9
12.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	10
13.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 미준수로 인한 처벌.....	11



서문

라코스테 그룹(이하 "라코스테"라 함)은 사업 활동 수행 시 "페어플레이 에브리데이" 행동강령에 따라 법과 윤리 기준을 준수한다.

윤리란 라코스테 모든 임직원의 책임이며 라코스테 직원 간의 관계뿐 아니라 제 3자(고객, 파트너사, 공급업체, 서비스업체, 주주)와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부정부패는 형사 범죄로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수수법(UKBA), 프랑스 형법 등 국가 법률과 국제 협약, 치외법권을 불문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다.

최근 부패방지 법률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형사 소송절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감독당국의 권한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프랑스의 부패방지 법률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조사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관의 감독하에 대기업과 그 자회사는 부정부패 방지 및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부정부패는 어떤 형태로든 정당한 경쟁의 규칙을 저해한다.

라코스테는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를 거부하며 부패방지 관련법을 준수한다.

라코스테의 조치와 행동 지침이 되는 원칙은 기본 원칙 중에서도 특히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10 대 원칙을 지키고 장려하겠다는 라코스테의 서약을 바탕으로 한다.

본 행동강령은 페어플레이 에브리데이 행동강령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그 목표는 위험을 인지하고 줄이는 지침이 되는 동시에, 위험 최소화를 위한 행동 기준을 통해 부정부패 방지와 근절을 위한 라코스테 지침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본 행동강령은 근무지에 상관 없이 라코스테 임직원 전원에게 적용된다.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은 라코스테가 활동하는 모든 상황과 관련 법을 전부 다루고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은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상황을 처리할 경우, 본 강령의 정신을 이해하고 상식 선에서 생각하며 주의를 기울여 투명성을 실천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어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보다 우선할 수 있다.

1. 행동강령의 핵심 내용

부정부패란 특정 공공 또는 민간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상 어떠한 행위를 속행, 지연, 방지하기 위해 금품, 뇌물 또는 약속을 청탁/제안(증여성 부정부패)하거나 수령(수령성 부정부패)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과 민간업자의 부정부패는 금지된다.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에서 정의한 부정부패에는 뇌물, 상납, 강요, 청탁, 부정부패 범죄 수익금의 돈세탁이 포함된다.

영향력 행사란 공무원이나 민간업자가 자신의 실제 또는 부여된 영향력을 남용하여 당국이나 정부기관에서 유리한 결정이나 처우를 받도록 이들에게 금전 또는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입법, 사법, 정치 관련 직책에 있는 모든 사람(세관, 중앙은행 등)은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2. 책임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의 이행은 라코스테 법무팀에서 조율한다.

라코스테 임원 및 경영진은 청렴 문화를 실현하고 고취해야 한다. 임원 및 경영진의 행동은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임원 및 경영진은 라코스테의 자원과 재화가 부정부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자회사 CEO는 자신의 담당 부문에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의 이행을 담당하고 책임진다.

관리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자신의 팀에 배포하여, 팀원이 본 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며, 윤리적인 목적의 완전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직원에게 제공한다.

모든 관리자는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 시행을 솔선수범하며, 라코스테 그룹 차원의 특정한 입장이 필요한 상황에 직원이 처해 있는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을 상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모든 임직원은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일상 업무 수행에서 이 강령을 지켜야 한다. 특히, 자신의 업무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과 의무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반드시 위험을 알고 인지해야 하며, 경고 신호를 파악하고, 행동 전 정보 공유가 필요한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원칙이 위반되어 보이는 상황은 어느 것이든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모두에게 장려되는 바이다(12 항 참조).

3. 일반 원칙

누구든 부정부패 또는 영향력 행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제 3 자에게 불법적인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임직원은 제 3 자에게 특혜를 대가로 이러한 향응을 수락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또는 기타 향응의 제안이나 약속을 거절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은 부정부패 의심의 소지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한다.

제 3 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형사 기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직원의 충실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이득에는 수령인에게 득이 되는 것(예: 친구나 친척에게 고용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제안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임직원은 공무원이나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부패의 시도를 관리자와 법무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무팀에 문의한다.

4. 선물 및 접대

경쟁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겨야 하는 것이다.

업무 결정은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다.

라코스테는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과 접대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라코스테 임직원과 그 가족은 라코스테와 상업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추구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선물이나 접대를 제안, 추구, 수령하는 행위를 권장하지 않는다.

업무상 선물이나 접대가 오가야 할 경우에는 상식 선에서 이러한 금품이나 접대가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령하거나 제안 받은 선물이나 접대는 무엇이든지 합리적이고 이따금 발생하는 것으로, 라코스테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상호호혜적이며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직원은 다음의 선물과 접대의 제안 또는 수령을 금한다.

- 50 유로가 넘는 선물(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 100 유로가 넘는 비업무 활동에 접대(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 금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상품권)
- 본 강령을 위반하는 접대

직원은 언제나 관리자에게 제 3 자로부터 받거나 얻은 선물이나 접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 3 자에게 선물이나 접대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규정에서 면제되는 사항은 신청자가 보고하는 집행위원회 위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회사는 자회사 CEO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 선정 또는 입찰 초청 기간 선물과 접대는 액수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된다.

잘 모를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5. 이해 상충

모든 임직원은 개인의 이해 관계가 라코스테의 이해와 상충하거나 자신의 독립적 판단이나 업무 청렴성을 해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단순히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제 3 자가 해당인의 업무 청렴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라코스테의 이미지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다.

모든 임직원은 각자 자신의 상황이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 관련 서비스를 협상하거나 수행하는 서비스업체가 해당 직원의 친구나 가족을 고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부정부패 행위로 이어지는 이해 상충에 빠지게 된다.

직원은 이해 상충 위험에 직면할 경우, 다음을 통해 투명성을 실천해야 한다.

- 관리자에게 잠재적 이해 상충을 즉시 보고
-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라코스테와 제 3 자의 관계에 개입을 삼가
- 이해 상충 관리를 위해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
-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통보

6. 공무원과의 관계

공무원이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안 또는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조사를 피하고, 조사의 결론에 영향을 주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이익(경제적 등)도 공무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부 서비스(*허가, 면허, 비자, 세관 통과 등*)의 형식적 절차와 신청을 확보하거나 신속하게 하는 금전 지급은 액수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한다.

이 규정은 현지법에 따라 금전 지급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 없이 적용된다.

제 3 자를 매개로 공무원과 접촉하는 행위는 제 3 자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합법적인 필요성이 있고 그 목적, 기간, 목표를 분명히 명시한 서면 문서에 업무가 공식적으로 정의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한 임직원은 라코스테의 조달 절차 중에서도 특히 입찰 제안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 공공 참여

라코스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의 재정적 연루를 피하고자 한다.

특히, 모든 임직원은 도덕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을 불문하고 자신의 정치 또는 지역사회 활동에 라코스테나 그 법인을 연관시키는 일은 삼가야 한다.

정치 또는 선출 활동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지역기관의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임직원은 라코스테나 그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예: 허가, 권한, 계약 부여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8. 기업 후원

라코스테는 인도주의, 자선, 과학 및 예술 활동과 추진과제를 지원하여 스포츠, 사회문화 활동과 행사 및 지원 활동을 후원한다.

부적절한 행동을 부추기거나 보상하는 자선 활동이나 후원 활동은 부정부패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기업 후원은 비윤리적 행위를 보상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련 임직원은 후원, 연대, 지원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반드시 다음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 정해진 목표에 명확히 부합
- 관련법과 라코스테의 내부 규칙 및 규정을 준수
- 이해 상충 발생 금지
- 라코스테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라코스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어느 약정이든 체결을 하기 전에는 먼저 해당 기관과 그 대리인 또는 수령인의 적합성과 청렴성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평가에는 해당인들의 명성, 기술 및 재무 자료, 범죄 기록, 이들 계약인의 전문성을 고려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각 당사자의 의무를 수립하고 할당되는 재정적 자원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질을 평가하는 조건을 명시한다.

후원 이후에는 재정적 자원 또는 증여가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9.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며, 투명한 재무 정보

라코스테는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재무 정보를 이해당사자 중에서도 특히 주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모든 거래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완전 문서화로 기록을 하여 거래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라코스테의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회계 기입 또는 차명 계좌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중장부는 부적절한 금전 지급을 촉진하거나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대 보유해서는 안 된다.

거래, 자산, 부채, 기타 재무 정보는 라코스테의 경영진 또는 내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추어서는 안 된다.

제 3 자 중에서도 특히 공급업체, 서비스업체, 기타 사업 계약과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장부, 청구서, 기타 문서와 보관기록은 정직을 바탕으로 수립하고 주의를 기울여 유지한다.

비용 장부를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나 금전 지급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모든 거래는 내부 관리 절차와 규정에 따라 관련 관리자가 수행하고 승인해야 한다.

10. 부정부패로 인식될 수 있는 사항

직접적인 청탁이 아니더라도 부정부패 행위로 인정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경고 신호를 파악하면 모호한 상황을 피하고 적절한 조치를 더 잘 취할 수 있다.

잠재적 경고 신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금, 비용, 보수, 수수료
- 반복적이고 지나친 접대(레저, 저녁, 여행)
- 계약서에 공식화하기 꺼리는 관계
- 공공 또는 민간 이해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특정 매개인
- 업무의 자격이나 경험 부족
- 결과를 평소와는 달리 빨리 제공하겠다는 약속

11. 취할 수 있는 예방조치

- 라코스테의 내부 규칙과 규정 중에서도 특히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고 철저히 따른다.

- "페어플레이 에브리데이" 행동강령과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의 원칙을 따르고 임직원과 동료를 경칭하여 술선수범한다.
- 관계를 수립하기 전이나 관계를 맺는 도중 파트너사와 제공업체를 조사할 경우에는(해당 회사의 주주, 평판, 임원 평판, 재무 상황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내부 절차를 적용한다.
- 당사의 부패방지 전략을 장려한다.

12.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

특정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경우, 정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압박감을 느껴 임의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조치를 취하기까지 시간을 갖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 합법적인 일인가? 정직한 일인가?
- 라코스테의 가치, 본 행동강령과 "페어플레이 에브리데이" 행동강령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 해당 결정에 내가 동의하는가?
- 나의 결정에 라코스테의 다른 사람이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나의 동료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친구와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
- 언론이나 SNS 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를 피하고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임직원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거나 양립하지 않는 행태나 행위는 다음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경영진
- 법무팀 또는 HR

라코스테는 준법 감시인을 지정하였으며 신고된 위반사항을 수집하고 해결 절차를 규정하였다.

라코스테 임직원 중 부정부패, 영향력 행사,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알게 된 경우, 본 강령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신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신고를 하려는 내부고발자는 아래의 주소를 통해 준법감시인에게 연락할 수 있다.

- 주소: <https://lacoste.signalement.net/entreprises>

정보 기밀은 내부고발 프로세스에 따라 보호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뇌물 거부 결과로 라코스테에 기회가 사라질지라도 뇌물 제공 또는 수령을 거부한 이유로 강등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기타 부정적인 결과에 놓이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의 위반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는 임직원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임직원은 동료나 회사에 해가 되는 잘못된 정보의 유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익명 신고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어 장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익명 신고는 조사에 필요한 사실 요소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공될 때만 다룬다.

내부고발 절차를 오남용하는 임직원은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의 평가, 이해, 적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영진이나 법무팀에 연락한다. 이들의 의견이나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13.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 미준수로 인한 처벌

관련 부패방지법을 위반하는 임직원 또는 제 3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라코스테 외적으로 엄중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법에 따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국내 공무원(프랑스 형법 제 432-11 조 및 제 433-1 조) 또는 외국 공무원(프랑스 형법 제 435-1 조 및 제 435-3 조)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질러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징역 10 년 이하와 벌금 1 백만 유로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의 2 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 민간업자를 상대로 부정부패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 징역 5 년 이하와 벌금 50 만 유로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의 2 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프랑스 형법 제 445-1 조 및 제 445-2 조).
-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은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의 최대 5 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프랑스 형법 제 131-38 조).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 또는 시행 절차의 미준수는 고용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본 부패방지 행동강령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임직원은 고용 계약 해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